

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639
------	-----

2023. 5. 3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3월 29일, 문성호 의원(찬성자 39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3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】

-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3.4.25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문성호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 근거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는 등 전통무예 활성화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추진을 적극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통무예지도자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3호).

- 나.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로써 전통무예를 보존·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함(안 제3조제3항).
- 다. 전통무예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필요 사업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4조제1항).
- 라. 전통무예 진흥을 목적으로 서울시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의2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전통무예진흥법」 제4조¹⁾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, 우리의 고유한 전통무예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서울시의 전통무예 활성화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현황

- 전통무예는 전통문화와 그 맥을 같이하여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강조하는 스포츠로서 경쟁에 따른 결과를 중시하는 현대 스포츠의 한계를 넘는 문화적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의 생성과 소멸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.

1) 「전통무예진흥법」 제4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실시한 2019년 5월 기준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통 무예 종목은 전국에 약 64개가 존재하고 있으며,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는 총 231개로 파악되고 있음.
- 64개의 전통무예 종목 중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기준으로는 정회원 13개²⁾, 준회원 3개(카라데, 카바디, 킥복싱)의 단체를 비롯해 인정단체 1개(특공무술)가 존재하고 있음.

다. 서울시 전통무예 지원 현황

- 서울시 또한 전통무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라 몇 개의 종목과 단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임.
- 서울시에서는 민간단체의 대회 지원을 통해서만 전통무예 분야를 지원 하였으며, 2023년에는 전통무예민간단체 생활체육대회 지원 공모를 통하여 총 5개 단체에, 1억 3천5백만원의 지원금을 결정한 바 있음.

< 전통무예 관련 선정 대회 현황 >

연번	단체명	사업명(대회)	예상참가인원	심의 결정액(천원)
1	서울시국학기공협회	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뇌활용 능력향상 브레인스포츠 국학기공교실	975명	15,000
2	세계어린이스포츠위원회	2023 서울컵 온·오프라인 국제오픈어린이태권도대회	1,500명	40,000
3	세계합기도무도연맹	2023 서울 세계 합기도 페스티벌	700명	20,000
4	서울시태권도협회	2023 서울특별시 한마음 생활체육태권도대회	1,000명	30,000
5	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	2023 전국청소년화랑대회	1,600명	30,000

2)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(정회원): 대한검도회, 대한국학기공협회, 대한궁도협회, 대한우슈협회, 대한태권도협회, 대한택견회,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, 대한레슬링협회, 대한복싱협회, 대한씨름협회, 대한유도회, 대한펜싱협회, 대한양궁협회

-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전통무예의 진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조례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기 위해 ▶전통무예지도자 정의 신설 ▶서울시장의 책무로 전통무예를 보존·진흥을 위한 노력 명시 ▶서울시장이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▶전통무예 관련 협력체계 구축과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필요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라. 세부내용 검토

(1) 전통무예지도자의 정의(안 제2조제3호)

- 개정안은 “전통무예지도자” 를 학교, 직장,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.
- 이는 「전통무예진흥법」에서 규정한 정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·조례간 용어의 정합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

(2) 시장의 책무(안 제3조제3항)

- 개정안은 전통무예가 지닌 전형(典型)을 유지하면서 서울시의 특유의 무예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있음.
-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는 기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 “서울특별시의 특유의 무예”가 뚜렷하게 무엇인지 특정하기에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.
- 따라서 “특유의 무예”를 “전통무예의 맥이 유지” 발전되도록 자구 수정의견을 드림.

(3)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(안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)

- 개정안은 전통무예에 관련 개인·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서울 시장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.
- 세부적인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▶전통무예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▶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육성·지원 ▶전통무예의 종목 간 학술 교류 활동 지원 ▶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▶전통무예의 위상 제고를 위한 명소화 등 구체적인 사업들을 적시하고 있음.
- 이들 사업은 전통무예 진흥 사업 추진의 다각화·활성화 시키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.

(4) 전통무예 실태조사(안 제4조의2)

- 개정안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전통무예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없기 때문에 전통무예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전통무예 단체를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- 다만 실태조사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업이 수립·추진되기 전에 시행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책방향의 수립에 기여

하고 정확한 현황의 파악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(5) 표창(안 제5조)

- 개정안은 표창의 공적 대상을 다양하게 열거하여 표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전통무예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.
- 다만 개정안에서 표창 수여의 방법을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창 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바, 표창의 경우 별도 조례에서는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 및 금지하는 규정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자구 수정을 제안드립니다.

< 수정의견 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<p>제5조(표창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통무예의 보전 및 전승 기여 2. 전통무예의 대중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3. 서울특별시가 개최하는 대회 또는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4. 서울특별시가 개최하는 대회에서 우수 성적 획득 5.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적 	<p>제5조(표창) 시장은 <u>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</u>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 <p><삭 제></p>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(재적위원 7명, 참석위원 7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지금까지 전통무예의 진흥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으로써 실질적인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서 개정안에 따라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- 다만 개정안의 서울특별시 ‘특유의 무예’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므로,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반영하는 ‘전통무예의 맥이 유지’ 발전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부여함.

나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서울시의 전통무예가 그 고유한 맥을 유지·발전할 수 있도록 수정함(안 제3조제3항).
- 나.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를 따르도록 수정함(안 제5조).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·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(典型)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·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안 제5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표창)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3조(책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제5조(표창) 시장은 <u>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</u>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책무) 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<u>전통무예를 보존·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(典型)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특유의 무예로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5조(표창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공적이 탁월한</u>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전통무예의 보전 및 전승 기여</u> 2. <u>전통무예의 대중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</u> 3. <u>서울특별시가 개최하는 대회 또는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</u> 4. <u>서울특별시가 개최하는 대회에서 우수 성적 획득</u> 5. <u>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적</u> 	<p>제3조(책무) 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<u>전통무예를 보존·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(典型)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·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5조(표창) 시장은 <u>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</u>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 <p><삭제></p>

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전통무예지도자”란 학교, 직장,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·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(典型)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·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1. 전통무예의 종목 복원 등 전통무예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
2. 전통무예 관련 선수,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육성·지원
3. 전통무예의 종목 간 및 종목 내 학술교류 활동 지원
4.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·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
5. 전통무예지도자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
6.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

7. 전통무예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
8.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실태조사)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전통무예지도자</u>”란 학교, 직장, 지역 사회 등에서 <u>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</u>를 말한다.</p>
<p>제3조(책무) ①·②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·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(典型)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·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4조(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전통무예 홍보·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</u></p> <p>2. <u>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</u></p> <p>3. <u>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</u></p> <p>4. <u>국내·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</u></p> <p>5. <u>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화 기반 조성</u></p> <p>6. <u>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u></p>	<p>제4조(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) ① 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전통무예의 종목 복원 등 전통무예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</u></p> <p>2. <u>전통무예 관련 선수,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육성·지원</u></p> <p>3. <u>전통무예의 종목 간 및 종목 내 학술교류 활동 지원</u></p> <p>4. <u>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·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</u></p> <p>5. <u>전통무예지도자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</u></p> <p>6. <u>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</u></p>

<신 설>

<신 설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<신 설>

7. 전통무예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

8.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<삭 제>

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4조의2(실태조사)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